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채우진 의원)

의안 번호	24-1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2. .
발의자 : 강동오, 권영숙, 남해석,
안미자, 차해영, 채우진,
한선미

1. 개정이유

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,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관계법령

1)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2. 13. ~ 2. 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남·여 부위원장 각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) ① (생략)</p> <p>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<u>남·여 부위원장</u>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제11조(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⑨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 계 법령】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(변경 전) "남·여 부위원장 각" (변경 후) "부위원장"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김소라
연락처	02-3153-8644